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2021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산림녹지과

부서: 산림녹지과
정책: 임업 경쟁력 강화
단위: 산림조성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산림녹지과		20,090,426	20,007,596	82,830
	국	5,066,318	5,047,687	18,631
	균	1,102,450	1,102,450	0
	도	3,715,470	3,674,237	41,233
	조	120,000	120,000	0
	군	10,086,188	10,063,222	22,966
임업 경쟁력 강화		20,077,910	19,995,080	82,830
	국	5,066,318	5,047,687	18,631
	균	1,102,450	1,102,450	0
	도	3,715,470	3,674,237	41,233
	조	120,000	120,000	0
	군	10,073,672	10,050,706	22,966
산림조성		6,297,937	6,297,937	0
	국	2,819,377	2,803,546	15,831
	도	880,791	876,218	4,573
	군	2,597,769	2,618,173	△20,404
공공산림가꾸기		791,899	760,827	31,072
	국	399,152	383,321	15,831
	도	117,824	113,251	4,573
	군	274,923	264,255	10,668
101 인건비		774,299	743,227	31,072
	국	390,352	374,521	15,831
	도	115,184	110,611	4,573
	군	268,763	258,095	10,668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774,299	743,227	31,072
○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		102,172	71,100	31,072
- 기본급 69,760원*4명*280.927일		78,390	53,044	25,346
	국	39,430	26,522	12,908
	도	11,689	7,957	3,732
	군	27,271	18,565	8,706
- 주휴수당 69,760원*4명*42일		11,720	8,790	2,930
	국	5,895	4,395	1,500
	도	1,748	1,319	429
	군	4,077	3,076	1,001
- 보험료 99,022,000원*9%		8,912	6,116	2,796
	국	4,481	3,058	1,423
	도	1,329	917	412
	군	3,102	2,141	961
공공산림가꾸기(자체)		354,010	385,082	△31,072
101 인건비		348,010	379,082	△31,072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348,010	379,082	△31,072
○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		348,010	379,082	△31,072
- 기본급 69,760원*23명*162.3775일		260,532	288,807	△28,275
- 보험료 348,010,000원*9%		31,321	34,118	△2,797
산림소득		3,978,487	3,895,657	82,830
	국	1,360,932	1,358,132	2,800
	도	443,484	406,824	36,660

부서: 산림녹지과
정책: 임업 경쟁력 강화
단위: 산림소득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	조	120,000	120,000	0
	군	2,054,071	2,010,701	43,370
임산물 유통기반조성		17,000	10,000	7,000
	국	6,800	4,000	2,800
	도	3,060	1,800	1,260
	군	7,140	4,200	2,940
402 민간자본이전		17,000	10,000	7,000
	국	6,800	4,000	2,800
	도	3,060	1,800	1,260
	군	7,140	4,200	2,940
02 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		17,000	10,000	7,000
○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				
34,000,000원*1개소*50/100		17,000	10,000	7,000
	국	6,800	4,000	2,800
	도	3,060	1,800	1,260
	군	7,140	4,200	2,940
재해 피해복구 지원(보조)		70,800	0	70,800
	도	35,400	0	35,400
	군	35,400	0	35,400
302 이주및재해보상금		70,800	0	70,800
	도	35,400	0	35,400
	군	35,400	0	35,400
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		70,800	0	70,800
○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				
236,000,000원*30%		70,800	0	70,800
	도	35,400	0	35,400
	군	35,400	0	35,400
재해 피해복구 지원(자체)		5,030	0	5,030
302 이주및재해보상금		5,030	0	5,030
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		5,030	0	5,030
○4월 이상저온 피해복구비(자체) 5,030,000원		5,030	0	5,030